

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
번호 1905

제출년월일 : 2009. 10. 7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기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,
- 환경보전위원회 기능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함.

□ 주요내용

- 환경보전계획수립 시기 및 용어가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경기도 환경 기본조례」와 상이하여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수립시기 및 용어 변경(안 제4조)
 - 용어변경 : 환경기본계획 → 환경보전계획
 - 수립시기 변경 : 5년마다 수립 → 10년마다 수립,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.
- 체계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기능에 환경보전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8조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9. 8. 6. ~ 8. 26.(20일간)

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환경기본계획의 수립)” 을 “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” 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“환경기본계획” 을 각각 “환경보전계획” 으로 한다.

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녹색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환경보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
3.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규정하는 사항
4.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거나,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환경기본계획의 수립)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녹색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	제4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 ①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녹색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시의 환경보전계획(이하 "환경보전계획"이라 한다)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,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환경보전계획.....
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③..... 환경보전계획.....
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"수도권대기환경청, 한강유역환경청" 경기도 및 학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	④..... 환경보전계획.....
⑤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자체없이 이를 공표하며 추진하여야 한다.	⑤..... 환경보전계획.....
⑥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⑥.....환경보전계획.....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(삼입) 자문에 응한다.	제8조(위원회 기능)시장의..... 1. 환경보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 2. (현행 제1호와 같음)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4.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거나,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<u><신 설></u>	
1. (생략)	
2. (생략)	
3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	